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수산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수산업법 일부개정령으로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신속히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제도와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관리기록 및 유실어구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어구관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제도의 도입으로 철거된 어구·시설물의 보관, 처리, 반환, 귀속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신설)

- 1) 법 제65조의2에 따라 철거한 어구·시설물을 소유자나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고, 보관물이 변질 또는 파괴 등의 우려시 매각하고, 매각 대금은 보관하여 공고토록함
- 2) 공고후 소유자나 사용자가 어구·시설물을 반환 요구시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후 반환하며, 철거·매각 등에 소요된 비용을 소유자나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나. 법 제76조의3에 따른 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점검자를 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공무원,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정함(안 제46조의2 신설)

다. 어업감독공무원 권한의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에게,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하고, 어구 관리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련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 마련(안 제74조 제3항, 제4항 및 제6항 신설)

라. 어구관리기록부 작성·비치·보전, 거짓 작성 및 유실어구 미신고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표 12 제2호 카-1 및 카-2 신설)

마. 어구관리 제도 도입·운영에 따라 행정관청·해양경찰청 및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서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해당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등을 취급·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5조 본문 개정, 같은 조 제18의2, 제20의2, 제20의4호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 제41조의3 및 제4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어구·시설물의 보관 및 처리 등) ① 행정관청은 법 제65조의

2제3항에 따라 철거한 어구·시설물을 보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의 게시판·인터넷 등에 그 사실을 일정 기간 공고하여야 하며, 어구·시설물의 보관대장을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어구·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 일간신문, 관보, 공보, 인터넷 등에 다시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고할 수 있다.

③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어구·시설물을 보관할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변질 또는 파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어구·시설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금 보관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1항 및 2항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어구·시설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

1. 경쟁입찰을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적 가치가 희소한 경우 등 경쟁입찰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1조의3(어구·시설물의 반환과 귀속 등) ① 행정관청이 보관하고 있는 어구·시설물(매각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반환신청서를 받은 후 반환신청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어구·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어구·시설물의 제거·운반·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법 제40조, 제60조제1항 및 제76조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③ 제41조의2제2항(제41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어구·시설물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어구·시설물은 폐기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제46조의2(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점검자) 법제76조의3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공무원

2.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

제74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3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 기록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제1항의 권한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어구생산업 및 판매업, 어구·부표보 증금제 업무에 한정하며,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이 수행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출입, 질문, 검사
2. 법 제76조의2제2항에 따른 유실어구의 신고 접수
3.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른 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점검
4. 법 제112조제4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65조의2에 따른 어구·시설물의 철거, 보관, 처리, 반환 등에 관한 업무
2. 법 제76조의2에 따른 어구관리기록, 유실어구신고 등 어구관리시스

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

3.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폐어구 수거 및 처리 사업에 관한 업무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관청”을 “행정관청·해양경찰청장”으로, “포함한다) 및 어구보증금관리센터(제20호의2부터 제20호의4까지”를 “포함한다.) 및 어구보증금관리센터(제20호의2, 제20호의3, 제20호의5, 제20호의6”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0호의2, 제20호의3 및 제20호의4를 각각 제20호의3, 제20호의5 및 제20호의6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0호의2 및 제20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의2. 법 제65조의2에 따른 어구·시설물의 철거, 보관, 처리, 반환 등에 관한 업무

20의2. 법 제71조에 따른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접수·처리,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

20의4. 법 제76조의2에 따른 어구관리기록, 유실어구 신고·접수·처리, 어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

별표 12 제2호에 카-1 및 카-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1. 법 제7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112조 제4항 제8호의2	50	70	100
카-2. 법 제7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실어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2조 제4항 제8호의3	50	70	100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1조의2(어구·시설물의 보관 및 처리 등) ① 행정관청은 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라 철거한 어구·시설물을 보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의 게시판·인터넷 등에 그 사실을 일정 기간 공고하여야 하며, 어구·시설물의 보관대장을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u> <u>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어구·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 일간신문, 관보, 공보, 인터넷 등에 다시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고할 수 있다.</u> <u>③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어</u>

<신 설>

구·시설물을 보관할 경우 다투아
없어지거나 변질 또는 파괴 등
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어
구·시설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
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
금 보관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1
항 및 2항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어구·시설물
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
라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

1. 경쟁입찰을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적 가치가 희소한 경우
등 경쟁입찰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1조의3(어구·시설물의 반환
과 귀속 등) ① 행정관청이 보
관하고 있는 어구·시설물(매각
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반환하
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

<신 설>

로 정하는 반환신청서를 받은 후 반환신청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어구·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어구·시설물의 제거·운반·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법 제40조, 제60조제1항 및 제76조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③ 제41조의2제2항(제41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어구·시설물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어구·시설물은 폐기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제46조의2(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점검자) 법제76조의3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제74조(권한의 위임 등) ①·②
(생략)
<신설>

<신설>

공무원

2.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
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

제74조(권한의 위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1
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제1항
의 권한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위
임한다.(어구생산업 및 판매업,
어구·부표보증금제 업무에 한
정하며, 「해양환경관리법」 제
116조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
이 수행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
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
다.

1.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출입,
질문, 검사
2. 법 제76조의2제2항에 따른
유실어구의 신고 접수
3.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른
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점검
4. 법 제112조제4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따른 과태료의 부
과·징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장에게 위탁한다.

1. (생 략)

2.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폐어구 수거 및 처리 사업에 관한 업무

3. (생 략)

<신 설>

<신 설>

⑤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행과 같음)

4.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어구 생산업 및 어구판매업 기록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65조의2에 따른 어구·시설물의 철거, 보관, 처리, 반환 등에 관한 업무

2. 법 제76조의2에 따른 어구관리기록, 유실어구신고 등 어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

3.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폐어

제7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u>행정관청</u>(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어구보증금관리센터(제20호의2부터 제20호의4까지만 해당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18. (생략) <u><신설></u> 19.·20. (생략) <u><신설></u> 20의2. (생략)	<u>구 수거 및 처리 사업에 관한 업무</u> 제7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u>행정관청·해양경찰청장</u>----- ----- ----- -- 포함한다.) 및 어구보증금관리센터(제20호의2, 제20호의3, 제20호의5, 제20호의6----- ----- ----- ----- ----- ----- ----- -----. 1. ~ 18. (현행과 같음) 18의2. 법 제65조의2에 따른 어구·시설물의 철거, 보관, 처리, 반환 등에 관한 업무 19.·20. (현행과 같음) 20의2. 법 제71조에 따른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접수·처리,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 20의3. (현행 제20호의2와 같음)
---	---

<u><신 설></u> <u>20의3. · 20의4.</u> (생 략) 21. ~ 24. (생 략)	<u>20의4. 법 제76조의2에 따른 어</u> <u>구관리기록, 유실어구 신고 ·</u> <u>접수 · 처리, 어구관리시스템</u> <u>구축 · 운영 등에 관한 업무</u> <u>20의5. · 20의6.</u> (현행 제20호의3 및 제20호의4와 같음) 21. ~ 24.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어구순환기획과	
연 락 처	(051) 773 - 5604